

새터 반성폭력 내규,
왜 필요한가요? 3

성폭력은 무엇인가요 4

피해를 당한다면 이럴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도와줍시다 7

새터 반성폭력 내규 9

성폭력과 새터 반성폭력 내규,
이런 게 궁금해요 15

새터 반성폭력 내규 왜 필요한가요?

대학에 들어온 신입생들이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것 중 하나는 오리엔테이션과 새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터는 새내기들이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첫인상의 자리'이며 4년간의 대학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선배들, 동기들과 만나 친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새터의 좋은 의미에도 불구하고 새터 기간에도 역시 많은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고 공동체 문화 속에서 성폭력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새터 기간에 새내기들과 선배들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선배들, 동기들과 친해지기 위해 재미있는 게임들을 하기도 하고 촌극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함께 술을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단순히 '재미있고 즐겁게' 또는 '친해지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알게 모르게 많은 성폭력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괜히 내가 과민반응하는 것은 아닐까', '관계가 서먹해지면 어쩌나' 하는 이유들 때문에 그런 불편함들이나 불쾌함을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고 참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터 반성폭력 내규는 이러한 불편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한사람이라도 누군가가 불편하다고 문제를 제기했을 때 모두가 함께 얘기해서 고쳐나갈 수 있는 틀을 제공함으로써 대수롭지 않게 넘겨왔던 성폭력들이 잘못임을 인정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터 반성폭력 내규가 존재함으로써 새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에 대해 참여자들이 좀더 민감해질 수 있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무심코 행해질 수 있는 새터에서의 성폭력을 어느 정도 미리 방지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새터 문화를 조금씩 변화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보다 폭넓게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터가 새내기들이 대학생활의 시작을 여는 문이듯이 새터 반성폭력 내규는 연세에서 성폭력의 뿌리를 뽑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책자를 통해, 그 필요성에 대한 광범위한 인식을 다같이 공유하며 새터 내규를 자발적으로 지키고 시행해나가는 가운데 즐거운 새터가 진행될 수 있길 바랍니다.



흔히 우리가 성폭력이라고 생각하는 극단적인 성폭력(강간, 강제추행 등)만이 성폭력이 아닙니다. '친분의 표현'이라고 생각되는 가벼운 신체접촉이나 언어 등도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



하나, '동의'라구요?

성폭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특히 여성)이 자신이 불쾌하고 불편한 경우라도 명백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애매하게) 표현하더라도 많은 남성들이 그것을 거부 의사로 받아들이지 않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뭐 하나 할 때마다 여성에게 괜찮겠냐고 물어봐야 하는 거냐고, 그러면 너무 서먹서먹해 지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할텐데요, 정말 즐거운 새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폭력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일 경우 상대방에게 가볍게 물어보는 것은 기본적인 에티켓이 될 수 있습니다.



둘, 성폭력은 사회구조적 문제입니다.

성폭력은 우리 일상의 성폭력적 문화로부터 비롯되는 문제이며 개인의 도덕성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특히 새터 때 발생하는 성폭력은 우리의 놀이문화, 공동체문화, 술자리문화에서 비롯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셋, 피해자 중심주의, 피해자 보호원칙?

피해자 중심주의란 무엇이 성폭력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피해자의 주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성폭력 사건 해결의 전 과정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폭력 사건은 많은 경우 증인이 없는 은밀한 장소에서 일어나며 명백한 증거가 남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성폭력 여부는 피해자의 경험과 느낌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주관이라는 것이 애매모호하고 피해자가 없는 사건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겠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자신이 성폭력 피해자라는 것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여자가 먼저 유혹한 거 아니냐', '지나치게 민감하게 구는 것 아니냐' 등의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피해자가 자신의 성폭력 경험을 누군가에게 드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모든 성폭력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을만한 정보는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야 합니다.



넷,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누군가 어떤 행위에 대해 성폭력적이라고 느끼고 문제제기했을 때 그러한 문제 제기가 귀찮은 것이라거나 괜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피해를 당한다면 이럴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도와줍시다

1 성폭력적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자신의 불편함을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1) 흥겹게 놀아야 하는 분위기를 자신이 망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 2) 성폭력은 대부분 친한 친구나 선후배 사이에서 발생하는데 친한 친구나 선후배 사이가 어색해질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 3) 새내기나 선배에게 성폭력을 경험했을 경우 새터 시기 처음 만난 선배에게 문제제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 그러나 성폭력은 잘못된 것이고, 함께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자신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주변에서는 용기 있게 말을 한 경우 맞장구를 쳐줍시다. 그리고 불편한 기색이 보인다면 선배가 먼저 문제제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피해 이후 오히려 자신을 책망하기도 합니다.

‘혹시 내 옷차림이나 행동이 성폭력을 유발한 것이 아닐까’, ‘왜 그 때 싫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등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사람일뿐입니다. 성폭력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피해자에게 성폭력이 절대 피해자의 탓이 아님을 환기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3 피해 이후 대부분 가해자를 멀리하고 싶어하고, 사건을 다시 떠올리기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런 상황이 비밀비재하기 때문에 선배나 동기가 사건을 알게 되고 피해자가 사건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이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려 노력해야 하고, 피해자를 다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가해자를

대면하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 가해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사건이 신고되면 무엇보다도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피해자를 신뢰한다는 느낌을 줘야 합니다.

- 사건의 당사자이자 사건을 성폭력으로 인지하고 판단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피해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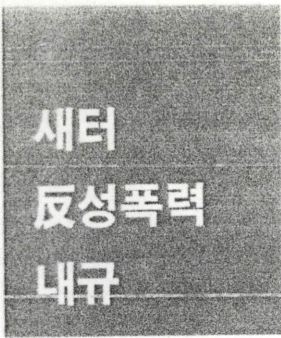
→ ‘그런 일은 별 거 아니지 않아?’, ‘뭘 신고까지 하니?’ 등의 이야기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경험과 생각이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줍니다. 피해자의 이야기를 믿고 함께 해결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5 최대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경험을 이해하며 들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피해자가 상처를 극복하고,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사건 해결 방법의 가능한 선택지들을 이야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6 특히 새내기인 경우 성폭력을 당한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 새터 내규가 있음을 인지시키고, 학생회 등에 빠른 시간 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7 위급한 상황일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증거 확보를 위해서 옷을 갈아입거나 몸을 씻지 말고 바로 병원을 가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 전화를 걸 수도 있습니다. 우선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마음을 안정시키세요.



* 이 내규의 적용 시기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OT기간부터 각 단대의 신입생 수련회가 모두 끝날 때까지로 한다.

1. 목적

새터는 신입생이 가장 먼저 접하는 대학 문화이며, 이를 통해 대학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생긴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가지는 새터임에도, 여학우는 물론이고 남학우들도 음란 가요 등으로 대변되는 집단적 성폭력과 개인적으로 벌어지는 성폭력에 무방비한 채로 노출되었다. 진보적인 공간이라 여겨지는 대학에서의 이러한 성문화는 신입생에게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응 방법들은 소극적이고 미비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비판, 근절시키기 위해 객관적인 잣대로서 내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 내규는 결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단죄를 넘어서 왜곡되고 비뚤어진 공동체 성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성폭력을 예방함으로써 학생회 첫 사업인 새터에서 바람직한 대학문화를 보여주자는 것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전 교양이나 내규의 여론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잘못된 성의식(혹은 성문화)을 지적해내고 올바른 성문화를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은 동의하지 않은 성적인 성격을 띤 언어적, 정신적, 신체적 행위 및 요구, 그리고 성별에 기반한 차별적 행위를 뜻한다.

여기 나오는 예들은 이런 것들도 때에 따라서는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 집단적으로 벌어지는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특정 개인이 아니라 집단 대 집단인 경우, 혹은 집단 대 개인의 경우

① 집단적으로 어느 한 성을 비하하는 발언(언어폭력)을 하거나 성행위, 성기 등을 흉내내는 경우

예1) 조별로 촌극이나 장기자랑을 할 때

- 96년 새터에서 모단대에서는 장기자랑 시간에 남학생들이 성기 모양으로 스크럼을 짰 후, 맨 앞의 남학생이 암바사를 들고 있었다. 여학생이 암바사를 탁탁치며 그 당시 유행 하던 광고 멘트를 말하자 앞의 남학생은 암바사를 내뿜으며 사정하는 것을 흉내내었다.

- 99년 새터에서 모단대의 조별 준극 시간에 '학교에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남녀가 불을 꺼놓고 '오후, 힘들어요', '조금만 참아' 등의 성행위를 암시하는 말과 신 음소리로 표현했다.

예2) 98년도 응원 오리엔테이션 때 아카라카 응원단 중 여학우가 빨간 옷을 입고 있자 고대를 상징한다며 '벗어라'고 외침

② 새터 행사에서 사회자가 어느 한 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거나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

③ 공동의 공간에서 음란물, 사진 등을 부착하는 행위

예) 새터에서 방이름을 정하고 그 게시물을 꾸밀 때 음란한 그림을 그리거나 성적으로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④ 술을 마실 때 언어 폭력을 행사하거나 적대적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예) 억지로 술을 먹이거나 술을 따르라고 하는 경우, 또는 성적인 농담이나 음담패설로 한 성을 임의로 배제시키려는 경우

⑤ 소위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성행위를 몸짓 혹은 소리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

예) '첫날밤에' 등의 게임

⑥ 음란 가요를 부르는 경우

예) 정력가, 젖소부인 엘리제

2) 개인적으로 벌어지는 성폭력

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가까이에 앉게 하여 술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행위

② 신체적인 성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신체의 일부를 고의적으로 접촉

- 원치 않는데도 신체 일부를 애무하거나 문지르는 행위(입맞춤, 포옹)

- 성관계를 노골적으로 암시, 요구하는 행위

- 손으로 성행위 등을 나타내는 몸짓을 하는 경우

- 기타 접촉, 성관계를 강요하는 일체의 물리적 혹은 신체적 행위

예) 98년 새터에서 모단대에서는 신입생 남학생이 동기 여학우가 술에 취해 잘 때 옆에 누워 옷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입맞춤을 한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

③ 언어 폭력을 하는 경우

-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의 성적 활동, 성감각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는 행위

- 성적으로 모욕하는 호칭의 사용

- 불쾌한 성적 농담(농담의 내용이 왜곡된 성의식을 담고 있거나, 강간 등을 주제로 하는 농담)

- 기타 상대방이 모멸감을 느끼거나 인격의 손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표현이 잠재된 언사

④ 적대적 환경 조성

- 음란하고 징그러운 눈빛, 결눈질하거나 모욕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경우

- 음란한 쪽지, 편지를 보내는 행위

- 상대방이 위협적으로 느낄 상황을 조성

예) 벽으로 몰아붙여 팔에 가둔다거나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

- 화장실을 엿보거나 침입, 음란한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써놓는 경우

3. 의무

새터에 참여한 구성원은 새터 때의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모든 구성원의 성적 자율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대상

새터에 참가한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총여학생회로 신고하려면 전화
2123-3645(교내3645)로 하시
거나 yonseiswa@nownuri
.net 으로 신고해 주세요.

5. 신고와 신고기구

피해자 당사자는 물론이고 피해자의 상황을 공감하
는 제3자가 과(반)학생회, 단대학생회, 총여학생회,
신고함에 신고할 수 있다. 이때 피해자의 의지와 그

의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 물론 신고인은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보호되어야 한다. 사건
의 신고는 직접 방문, 전화, 서면 등 가능한 방법으로 신고한다. 신고기간은 새터 기간만
이 아니라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신고할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신심의 후유
증을 달고 신고를 결심하기 전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하므로 시효 규
정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6. 피해자의 보호

대부분의 성폭력이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고 범죄 피해자로서의 정당한 권리 주장으로 인
하여 받게되는 또 다른 범주의 사회적 불이익에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그러므로 성
폭력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소,
성명, 용모, 소속, 기타 피해자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대면하기 힘들어하는 경우 가해자를 피해
자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

7. 동조자의 처벌

성폭력 대책위는 성폭력의 가해자에 동조하는 자에 의하여 피해자와 그 주변인들이 정신
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등의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이 명백할 때에는 그 동조자에
대하여 가해자에 상응하는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단, 이때의 동조자는 새터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한다.

8.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 1) 각급 학생회는 과(반)내에서 집단적 혹은 개인적 성폭력이 발생했다는 제보가 들어오
면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에 논의 테이블을 제안해야 한다.
- 2) 신고함에 제보자가 들어오거나 총여에 제보가 들어오면 총여학생회가 제보자가 되어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에 논의 테이블을 제안해야 한다.
- 3) 내부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성폭력 사건을 사건 대책위원회의 논의 테이블로
가져와야 한다. 단,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건 대책위의 논의테이블로 가져오
지 않는다.

9.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

- 1) 새터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이 일어날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소속된 단대 학생회(단대를 대표할 수 있는 1인) 혹은 동아리 연합회, 과반 학생회(과반을 대표할 수 있는 1인) 혹은 동아리 대표자, 총여학생회(총여를 대표하는 1인), 총학생회(총학을 대표하는 1인)가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는 사건이 접수된 이후 바로 구성되어야 한다. 만약 가해자와 피해자의 소속이 다를 경우 쌍방의 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각각의 1인(가해자 소속, 피해자 소속)이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온다. 또 과반학생회가 없을 경우 단대 1인 혹은 동아리연합회 1인만 들어온다.(최소3인, 최대6인)
- 2)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에서는 필요에 따라 집행부를 둘 수 있다. 집행부의 구성은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집행부는 대책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한다.
- 3)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는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고 가해자 및 동조자의 처벌을 강제해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4)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성폭력 사건의 조사, 중재 및 사후처리
 - 가해자와 동조자의 징계 및 재교육
 - 피해자의 보상과 치료
 - 사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5)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 위원 중 사건을 누설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자에 한하여 위원직을 박탈한다.
- 6) 집단적 혹은 개인적 성폭력 사건 해결 방안의 원칙
 - ① 성폭력 사건 대책위의 논의 테이블로 가져와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징계에 대해서 논의한다.
 - ② 공식적인 실명사과(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혹은 공동체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를 받아 내야 하고 그것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는다. 과반장, 단대장의 차원에서 사건을 은폐시키려 한 경우 그에 대한 사과 대자보를 붙여야 한다.
 - ③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최우선 되어야 한다.
 - ④ 성폭력 사건 대책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처벌을 가해자 및 동조자에게 가한다.

10. 징계내용

가해자 및 동조자에 대한 징계는 성폭력 사건 대책위에서 내린다. 가해자 및 동조자에 대한 징계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 가해자 및 동조자들을 대상으로 왜곡된 성문화와 성폭력 문제에 대한 세미나
- 피해자에 대한 사과, 자신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명시한 사과대자보
- 성폭력이나 성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재교육
- 성폭력 상담소 등의 외부단체에서 일정기간 봉사
- 피해자가 원할 경우 일정기간 가해자 접근 금지

11. 개정

개정 안건의 상정과 의결은 확대운영위원회의 회칙에 따른다.

* 위 새터 반(反)성폭력 내규는 2000년 2월 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새터 반성폭력 내규는
2000년에 만들어졌고
올해로 두 해째를 맞이
합니다.

나는 모든
성폭력
반대한다

? 성폭력 이런 게 궁금해요 ?

Q 네구에 나와 있는 성폭력 행위들은 굉장히 예매하고 사소한 것들까지 건드리고 있는 데요. 그러면 여학우를 바라보는 것이나 술을 여러 번 권하는 것 같은 것도 성폭력이라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트집을 잡으면 도대체 무슨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A 네구에 나와 있는 예들이 모든 경우에 성폭력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것들도 때에 따라서는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같은 말이나 행동이라도 그 일이 일어난 상황과 맥락에 따라 성폭력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복잡한 버스나 전철 안에서 몸이 접촉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고의적으로 반복하여 여자의 몸에 밀착하는 것은 성폭력입니다. 데이트 신청을 해서 거절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싫다는데도 계속 따라다니며 추근거리는 것은 성폭력입니다. 술자리에서 마주앉은 사람에게 술을 따라주는 것은 당연한 예의지만 "여자가 따르는 술맛이 더 달다."는 식으로 여자동료를 술시중꾼 취급하는 행위는 당연히 성폭력입니다. 자연스럽고 당연히 해왔던 행동들이 혹시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고 서로 '즐겁게' 어울리는 분위기에서 배제시키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Q 성적 농담이나 촌극 등에서의 성행위 흉내, 첫날밤에 게임 등이 성폭력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모든 성적 표현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A 모든 성적인 표현이나 이야기를 금하는 도덕적 엄숙주의의 발상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상황적 맥락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가 중요한 것이겠지요. 성적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하겠지만 우리가 하는 성적인 이야기나 표현들이 어떠한 것이었나 생각해볼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음담패설로 한 성만 즐거워지고 다른 한 성은 불편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고 그로 인해 한 성은 성적으로 대상화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불편함으로 인해 공동체의 분위기에서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 표현을 할 때 불편해 하거나 불쾌해 하는 사람은 없을 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Q 세터는 새내기들과 선배들이 뭉쳐 끈끈한 관계를 만들고 하나된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혹시 세터 내규로 인해 분위기가 서먹해지지 않을까요?

A 모두가 즐거워야 할 세터에서 성폭력이 일어난다면 그 이상 서먹한 분위기가 또 있을까요. '공동체의 일치' 때문에 성폭력이 숨겨져야 한다면 그것이 더 문제가 아닐까요? 꼭 음란가요를 부르고 성에 대한 농담을 해야만 분위기가 즐거워지고 그런 것을 하지 못하면 분위기가 서먹해지는 것은 아니겠지요. 성에 대한 농담이나 음란 가요가 때에 따라 폭력적일 수 있다고 할 때 누군가에게 폭력적인 것으로 인해 즐거워지는 공동체라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얼마든지 다른 것들을 하면서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가해자도 결국 가부장적 사회 구조 속에서 또 하나의 피해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해자만 처벌할 수는 없지 않나요?

A 물론 아주 넓게 본다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구조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성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가해자는 그러한 잘못된 사회 구조를 실천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있다면 그에 반대되는 피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존재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일어난 피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Q 여자만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나요? 남자도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지 않나요?

A 물론 남자도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터 내규의 성폭력의 정의 부분에서 굳이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있듯이 여성에게만 성폭력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남자인 경우에도 세터 반성폭력 내규에 의거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 성폭력의 피해자가 여성이었고 남성이 피해지일 때도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가 다수 있어왔습니다.

Q 세터 내규에서는 가해자의 공개실명사과를 원칙으로 하는 있는데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 가해자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지는 않을까요?

A 실명사과자보는 가해자에 대한 단순한 단죄가 아니라 성폭력에 대해 공동체 구성원 전체에 사고하고 성폭력을 공동체적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사과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최소한의 표시겠지요. 이름을 걸고 하는 사과와 이름 없이 하는 사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통신문에서 실명을 걸고 쓴 글과 그렇지 않은 글이 주는 책임감이 다르듯이 익명으로 하는 사과라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쉽게 사과해버리고 넘어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명이 걸린 사과라면 좀더 책임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진심한 반성도 깊이있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폭력은 특이한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누구나 성폭력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명사과자보를 보고 '이런 성폭력범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겠지요.